

조선후기 ‘생애주기’형 공방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양상

박숙의방(朴淑儀房)과
영온옹주방(永溫翁主房)의
사례 분석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조교수, 경제학 전공
cho06@aks.ac.kr

- I. 머리말
- II. 분석 대상과 자료
- III.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의 경제적 기반
- IV. 영온옹주의 제사 거행과 묘소 관리
- V.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의 재정 운영
- VI. 맺음말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3S1A5A2A01019798), 2015년에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개최된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KSAA) Biennial Conference, 2016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AAS) 등에서 “Memorial Service and Graveyard Management for Princess Yŏng’ŏn, 1850-1852”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애들레이드에서 약정 토론을 맡아 흥미로운 논평을 해주셨던 Joanna Elfving-Hwang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게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로부터 받은 논평 또한 논문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I. 머리말

조선후기 왕실의 재정 운영에 관한 다양한 면모가 속속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호조나 선혜청을 비롯한 정부의 각 이문을 중심으로 한 ‘공적(公的)’인 재정 운영과는 별개로 대궐(大闕)을 중심으로 한 왕실 일족의 ‘사적(私的)’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내탕(內帑)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깊이 있게 검토되기 시작하였다.¹⁾ 하지만 그러한 검토는 주로 국왕,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 및 세자를 위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달(調達)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 운영된 궁방(宮房)의 재정 규모는 전체 왕실 재정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절반에 못 미치는 규모가 기타 후궁(後宮)이나 (세자 이외의) 왕자녀의 몫이었으며, 그러한 후궁 또는 왕자녀 중에는 후사(後嗣)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를 내수사(內需司)와 수진궁(壽進宮)을 비롯한 1사4궁(一司四宮) 또는 1사7궁(一司七宮)으로 통칭되는 내탕의 주요한 대규모 기관으로서의 ‘궁(宮)’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각종 후궁방이나 대군방 또는 공주방 등의 ‘방(房)’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기관에 해당하며, 그 수효는 수십 곳에 달한다.

대개 이러한 궁과 방을 통칭하여 ‘궁방(宮房)’이라고 하는데, 종래의 인식과 달리 최근 연구에서는 조달을 담당한 기관, 제사를 담당한 기관, 사가(私家) 성격의 기관 등으로 분명히 구분한 바 있다.²⁾ 하지만 기존 연구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궁방’ 중에서도 ‘궁’에 있었으며, 달리 말하자면 ‘조달 기관’으로서의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궁이나 왕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기관으로서의 ‘방’에 대한 실증적 탐구로서는 영조 임금이 즉위하기 전인 연잉군(延昞君) 시절에 대한 분석 정도가 겨우 이루어졌을 뿐이다.³⁾ 이렇게 조선후기의 후궁이나 왕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또는 왕실의 살림살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자료상의 제약 때문이

1) 자세한 내용은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을 참조하라.

2) 위의 책, 22-25쪽.

3) 조영준, 「연잉군방(延昞君房)의 살림살이와 경제적 기반」, 『英祖大王資料集5: 譜牒, 敎命, 御製御筆, 其他』(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125-133쪽.

다. 대규모 기관인 1사7궁이라는 주요 ‘궁’의 자료가 방대한 분량으로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여, 기타 후궁이나 왕자녀의 ‘방’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영온옹주(永溫翁主)와 그의 어머니 박숙의(朴淑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 대한 연대기의 기사는 단편적인 언급 정도로 그치고 있어 그동안 주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이었다는 정도로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후궁 및 왕자녀 중에서 유독 이들 모녀를 위해 운영된 ‘방’의 회계기록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온옹주방(永溫翁主房)이나 박숙의방(朴淑儀房)의 회계장부가 서울대학교의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⁴⁾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 글이 사실상 최초의 분석 시도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의 후궁 및 왕자녀의 살림살이는 ‘방’이라고 하는 명목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왕자녀의 경우, 대개 결혼을 계기로 대궐을 떠나 살게 되면서 국유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태로 수취하였고, 해당 토지에 대한 면세(免稅) 혜택을 통해 지대(地代)의 전부가 기관 운영에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해당 왕자녀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일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바탕이 그 면세지(免稅地)를 통해 마련되었고, 그가 죽고 나서는 4대(四代)에 걸쳐 제사를 지내는 수단이 되었다. 4대의 봉사(奉祀)가 끝나면 해당 토지는 국고(國庫)로 환수되어 면세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일컬어 왕실 토지의 ‘생애주기(life-cycle)’라고 표현한 바 있다.⁵⁾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제도적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의 토지 지급 현황을 비롯한 재정 운영의 실태에 대해 연대기 및 회계장부의 내역을 토대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4) 조영준, 앞의 책, 111쪽.

5) 후궁을 예시로 한 해설은 조영준, 위의 책, 76-77쪽을, 왕자녀에 대한 제도 설명은 조영준, 앞의 논문, 126쪽을 참조하라.

II. 분석 대상과 자료

영은옹주(1817~1829)는 조선의 제23대 국왕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의 딸이다. 영은옹주를 낳은 사람은 왕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가 아닌 후궁 숙의 박씨(淑儀朴氏, ?~1854)였다. 순조는 순원왕후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왕자와 세 명의 공주를 낳았고, 박씨의와의 사이에서는 영은옹주를 낳았다. 영은옹주는 전체 여섯 자녀 중에서 세 번째로 태어났으며, 박씨의의 유일한 소생이자, 순조의 유일한 서녀(庶女)였다. 그림1에 제시한 가계도(家系圖)를 통해 영은옹주의 이러한 위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가계도상의 위치와 한국인의 통념에만 의존한다면, 영은옹주는 박씨의와 더불어 왕실 내부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리라 선불리 속단할 수도 있다. 영은옹주의 어머니인 박씨의는 궁인(宮人) 출신으로서 임금의 아이를 낳게 되어, 그 다음날 한순간에 종2품(從二品)의 숙의(淑儀)가 된 후궁으로서⁶⁾ 본관이 밀양이라는 점만 알려져 있을 뿐, 그 아비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친가 및 외가를 비롯한 가계(家系)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다. 최근까지 그 생줄(生株)연도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미지의 인물이었고⁷⁾, 줄년이 1854년이라는 정보가 겨우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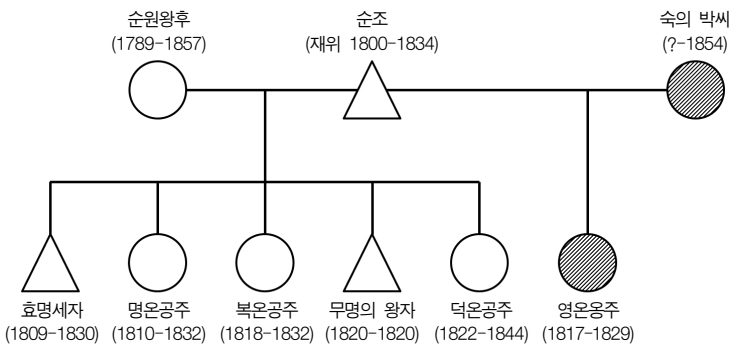


그림1-가계도를 통해 본 박씨의와 영은옹주

6) 『순조실록(純祖實錄)』, 1817년 10월 11일.

7) 지두환, 『순조대왕과 친인척』(역사문화, 2009), 434쪽.

8) 李美善, 『조선시대 後宮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12), 217쪽;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4년 6월 30일.

영은옹주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병치레가 잦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왕 순조가 아꼈을 뿐 아니라 왕실 일족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순조의 장남이자 영은옹주의 큰 오빠인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주었다고 한다.⁹⁾ 하지만 불행히도 영은옹주는 1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영은옹주는 후궁의 소생이자 여성·아동·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특징을 한 몸에 안고 살아간, 당대의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물론 국왕의 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 스토리가 전개되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영은옹주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그러므로 요서(天逝)한 옹주의 제사가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대개 이런 경우의 제사 수행은 왕실의 제사를 전담하는 기관의 몫으로 남겨지게 마련이었다. 당사자의 사후 일정 기간 동안은 독립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합사(合祀)하여 다른 왕자녀와 더불어 제사를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합사 이전에 이루어진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앞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영은옹주에 대해 어떤 형태의 제사가 행해졌는지, 언제까지 행해졌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행해졌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영은옹주방차하책(永溫翁主房上下冊)』이며, 1850년부터 1852년까지 3개년에 대해 해마다 1책씩 작성된 것이다. 거기에는 제사 수행이나 묘소 관리를 비롯하여 영은옹주방이라는 기관의 지출 내역이 건별·월별로 정리되어 있다. 영은옹주가 사망한 것이 1829년이었으니, 그로부터 무려 20년 이상 지난 뒤의 기록에 해당한다. 1829년과 1850년의 사이에도 해마다 이러한 장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9) 효명세자는 헌종(憲宗)의 아버지로서, 헌종에 의해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으며, 고종에 의해 다시 문조(文祖)로 추존되었다. 영은옹주가 죽었을 때 놀라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모(慈母)의 정경(情境)은 더욱 슬프게 여길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순조실록』, 1830년 7월 15일).

것처럼 여타의 대군방·왕자방·공주방·옹주방·현주방 등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회계장부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로 판단컨대, 『영은옹주방차하책』의 사료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비록 3개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내역이지만, 당대의 왕자녀를 위한 ‘방’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유일무이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영은옹주의 어머니인 박숙의를 위한 ‘방’인 박숙의방의 회계장부 역시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제만 보면 『숙의방차하책(淑儀房上下冊)』이라고 되어 있어, 어떤 숙의를 위한 방의 기록인지 알 수 없다. 예컨대, 19세기의 면세결 통계에서 확인되는 ‘숙의’로는 박숙의(朴淑儀), 방숙의(方淑儀), 범숙의(范淑儀) 등이 있는데,¹⁰⁾ 그중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¹¹⁾ 종래, 규장각에서 간행한 해제(解題)에서는 이 자료를 “숙의방(淑儀房)에서 지출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만든 회계책”이라고만 해설하고 있을 뿐,¹²⁾ 해당 숙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³⁾

하지만 『숙의방차하책』이 1851년과 1853년의 2개 연도에 대해 남아 있고, 제사에 관한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박숙의의 사망이 1854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자료의 ‘숙의’가 박숙의임을 확신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또한 『숙의방차하책』은 후궁방의 회계장부로서 역시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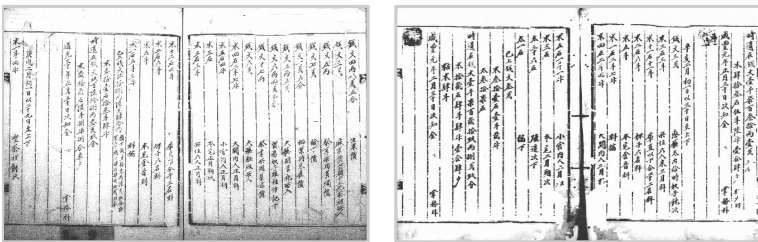


그림2- 『영은옹주방차하책』의 일부(왼쪽)와 『숙의방차하책』의 일부(오른쪽)

- 10) 조영준, 앞의 책, 340-344쪽.
- 11) 김창겸·김선주·권순형·이순구·이성임·임혜련, 『한국 왕실여성 인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263-273쪽에서 조선시대의 ‘숙의’를 일람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숙의 박씨와 숙의 범씨는 확인되는 반면, 숙의 방씨는 누락되어 있다.
- 12) 서울大學校奎章閣,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VII』(서울大學校奎章閣, 1983), 225쪽.
- 13) 韓祐祐,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東亞文化研究所, 1966), 172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온옹주방차하책』에서 1850·1851·1852년, 『숙의방차하책』에서 1851·1853년이라는 비슷한—그리고 일부 중첩되는—시기의 회계 내역을 찾을 수 있으므로, 양자를 비교해본다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영온옹주방의 기록을 통해 옹주 사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제사 수행이나 묘소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숙의방의 기록에서는 생존한 후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방’이라는 기관의 운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온옹주와 박숙의가 모녀관계라는 점, 이들 양자를 위한 기관의 회계 내역이 시기적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건대, 두 기관의 운영이 상호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들 두 기관을 포함하여 왕실의 재정 운영 전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손을 남기지 않은 후궁이나 왕자녀의 위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개 수진궁이라는 기관에 흡사되었으며, 영온옹주방과 박숙의방 역시 1866년에 수진궁에 흡사되었다. 그러므로 영온옹주방과 박숙의방이 수진궁이라는 왕실의 주요 조달 기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왕실재정을 총괄한 내수사와의 관계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III.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의 경제적 기반

1. 면세결의 지급

영온옹주와 그의 어머니 박숙의는 19세기 왕실재정 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우선 이들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방’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경제적 기반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조선후기 왕실의 궁과 방에서 보유한 경제적 기반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18세기 연잉군방의 사례에서는 노비(奴婢), 가사(家舍), 장토(庄土), 선물 및 진배(進排) 등이 살림살이

의 원천으로 분류된 바 있다.¹⁴⁾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1801년에 내노비(內奴婢)가 폐지되었으므로,¹⁵⁾ 19세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노비가 재산의 일부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사와 장토리는 부동산만 주요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

영은옹주와 박숙의 중에서 그러한 경제적 기반을 먼저 확보한 쪽은 박숙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옹주를 낳자마자 그 다음날인 1817년 10월 11일에 순조가 궁인 박씨를 숙의로 봉작(封爵)하였다. 그리고 약 1개월 후인 11월에는 박숙의방을 신설하고 면세결을 지급하였다. 전례와 법전에 의거하여 원결(元結) 200결(結)을 우선 획송(劃送)하고, 나머지 600결의 토지를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이다.¹⁶⁾ 하지만 600결의 토지를 바로 마련해주기에는 정부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입 대금으로서 은자(銀子) 2,000냥을 지급하고, 토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쌀과 콩을 5년 동안 매년 100섬씩 실어 보내는 것이 전례였는데, 은자 및 쌀과 콩을 모두 절반만 지급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이다.¹⁷⁾

그 후의 경과를 확인해보면, 600결의 토지를 구입해주는 것은 불가능했고, 절반의 은자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하라는 지시로부터 7년 뒤의 기록에서 불과 13결만 매입되어 박숙의방의 유토(有土)로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¹⁸⁾, “유토를 충당해줄 방도가 전혀 없으니” 그와 별도로 600결의 무토(無土)를 추가로 지급하게끔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이때 지급된 600결의 무토는 궁방 면세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약 4,500여 결가량 줄이고자 한 순조의 일대 개혁을 통해 확보된 토지의 일부였다.²⁰⁾ 그러한 개혁을 통해 환수된 결과물의 일부를 극히 예외적으로 박숙의에게 면세결로서 제공해준 것을 보면 박숙의에 대한 순조의 애정과 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게 확보된 800결의 무토와 13결의 유토는 1854년과 1860년의 면세결 일람표

14) 조영준, 앞의 논문, 127-132쪽.

15) 『순조실록』, 1801년 1월 28일.

16) 『승정원일기』, 1817년 11월 13일.

17) 『순조실록』, 1817년 12월 27일.

18) 정확히는 13결 13부 5속이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860년 3월 4일.

19) 『순조실록』, 1824년 1월 6일.

20) 조영준, 앞의 책, 80-81쪽.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의 1874·1880·1884·1895년의 일람표에 서는 무토 100결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1854년에 사망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던 800결 이상의 면세결이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든 것은 1866년에 수진궁으로 합사된 사정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²²⁾

영온옹주는 어머니 박숙의보다 10년 늦게 재산을 할당받았다. 영온옹주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저 ‘옹주’라고 불렀을 뿐이며, 10세가 되던 해인 1827년에 비로소 ‘영온옹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재산도 보유하게 된 것이다.²³⁾ 그림3은 당시에 작성된 “옹주를 영온옹주로 하라”는 임금의 명명(命名) 지시를 담은 고신(告身)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의 연대기 기사에서 영온옹주방의 면세결인 서원(西原)과 진천(鎭川)의 50결에 관한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컨대²⁴⁾ 1827년에 면세결이 지급되고, 그 토지는 모두 무토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²⁵⁾

기존 연구에서 정리한 면세결 일람표에 따르면, 영온옹주방에 부여된 면세결은 총 800결로서 모두 무토였고, 유토는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토 800결은 1854·1860·1874년의 통계에서 확인되고, 그 뒤로는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²⁶⁾ 실제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시기를 1860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진궁에 합사되었기 때문이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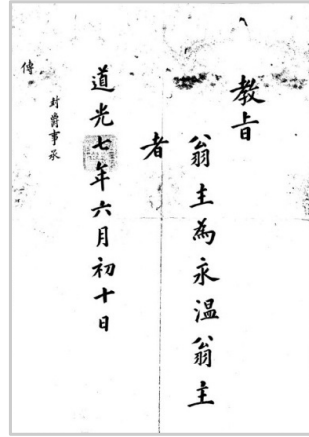


그림3-영온옹주의 고신(1827)
출처: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129쪽.

21) 위의 책, 340-344쪽.

22) 『비변사등록』의 기사에서는 이미 1860년에 수진궁에 합사된 것으로 되어 있다(『비변사등록』, 1860년 3월 4일). 이는 『용동궁등록(龍洞宮謄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고민정·안혜경·양선아·조영준, 『용동궁등록-탈초본-』, 소명출판, 2015, 137-138쪽 참조). 그러므로 이후에도 확인되는 무토 100결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박숙의에게는 제사를 주관하여 지낼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23) 『순조실록』, 1827년 6월 10일.

24) 『순조실록』, 1829년 3월 9일.

25) 회계장부는 아니지만 『명온공주방가례등록(明溫公主房嘉禮謄錄)』(古4255-2)을 통해 공주의 혼인 전에 가사와 전답이 어떻게 마련되어 분급되었는지 알 수 있어 훌륭한 비교 대상이 된다.

26) 조영준, 앞의 책, 340-344쪽.

27) 『비변사등록』, 1860년 3월 4일. 앞서 살펴본 박숙의방의 사례와 달리 전체 토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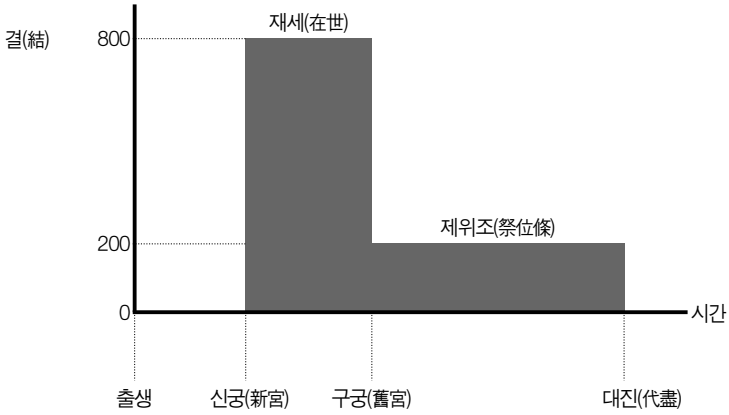


그림4-생애주기에 따른 옹주방의 면세결 지급 규정

출처: 『속대전(續大典)』(1746).

회수 시기가 1860년대인지 1870년대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졸년인 1829년 이후에도 생시(生時)와 마찬가지로 면세결 보유 규모가 무려 30-40년간 유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온옹주방에 대한 면세결의 지급 및 회수가 옹주방에 대한 일반적인 면세결 지급 규정(그림 4)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영온옹주의 재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그가 하가(下嫁)도 하지 않은 채 요서했는데도 대궐 밖 가사에 관한 정보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1851년에 한성판관(漢城判官) 이승경(李承敬, 1815-?)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조부지(京兆府誌)』의 「좌경제처(座更諸處)」를 보면 ‘영온옹주궁(永溫翁主宮)’이 한성의 다섯 구역 중의 하나인 ‘중부(中部)’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영온옹주의 사후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이 영온옹주궁은 영온옹주가 실제로 거주한 곳이 아니라 영온옹주를 위한 제사와 묘소 관리를 담당한, 그리고 『영온옹주방차하책』을 작성했던 영온옹주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옹주 사후에 옹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대궐 밖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특기할 만한 정보이다.

요컨대, 애초에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하여 가진 것 하나 없는 존재였던 박숙의가 임금의 아이를 낳고 나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난 영온옹주 역시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순조를 중심으

남김없이 회수한 대신에 쌀 30섬과 돈 300냥을 실어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로 한 왕실 일족의 특별한 배려로서, 국가의 (궁궐해저 가던)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숙의와 영온옹주는 공통적으로 일종의 특혜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들의 주요 재산인 토지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 각종 지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온옹주방과 박숙의방이 신설되었다. 그 기관을 통해 생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조달하고, 사후에는 제사 수행과 묘소 관리를 담당하였다.

2. 인원의 배정

제사 수행이나 묘소 관리를 비롯하여 ‘방’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장소의 특정 건물에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에는 어떤 인물들이 배속되어 각종 실무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일까? 인원의 명단이 직접 확보되지는 않지만, 『숙의방 차하책』과 『영온옹주방차하책』에 기재된 월료(月料)의 기재 내역을 통해 소속 직책 및 인원수를 복원해볼 수 있다.

우선 『영온옹주방차하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월료의 기재는 인적 구성의 위계에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파악되는 최상위 직책은 내인(內人)이다. 수진궁을 비롯한 4궁(四宮)에 제조상궁(提調尙宮) 이하 상궁이 개재되어 있던 것과 달리, 영온옹주방의 사례에서는 대궐 내인과 소궁(小宮) 내인만 확인된다. 대궐 내인은 정궁(正宮)에 속한 내인을, 소궁 내인은 영온옹주방에 속한 내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음식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방 내인(廚房內人)도 보이지만, 상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내인의 인원은 대개 2-3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은 본택(本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온옹주의 외가(박숙의의 친정)와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²⁸⁾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

28) 조영준, 앞의 책, 38쪽에 정리된 수진궁의 사례에서 사동본방노자(寺洞本房奴子), 사동본방비자(寺洞本房婢子), 안현본방노자(安峴本房奴子), 사동본방노자(社洞本房奴子) 등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왕의 본가 또는 잡지를 본궁(本宮), 왕비의 친정을 본방(本房)이라고 하였던 것에 대비하여, 후궁의 친정을 본택(本宅)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다.²⁹⁾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5-6명의 소임(所任)이었으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고지기(庫直) 이하 노자(奴子)가 22-23명, 비자(婢子)가 6명이었다. 이상의 인원을 '방'의 내부에서 일하는 내무(內務) 계통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묘소 마름(墓所舍音)이나 강마름(江舍音) 등 외무(外務) 계통의 인원이 1-2명 있었다. 이러한 인원 구성을 4궁의 대표 격인 수진궁과 비교해보면³⁰⁾ 대략 1/3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인원은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급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 수단은 쌀(米)이었다. 대체로 연체 없이 제 달에 지급받았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1850년 1월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궐 내인에게 4섬 2말 7되, 소궁 내인에게 5섬 4되, 본택에 3섬, 소임 6인에게 3섬 3말(1인당 8말), 고지기 이하 23명에게 12섬 4말(1인당 8말), 비자 6명에게 2섬 6말(1인당 6말), 본택 마름에게 5말 등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1852년 12월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궐 내인에게 5섬 1말 7되, 소궁 내인에게 5섬 8말 3되, 본택에 3섬, 소임 5인에게 2섬 10말(1인당 8말), 고지기 이하 22명에게 11섬 11두(1인당 8말), 비자 6명에게 2섬 6말(1인당 6말),

표1-1850년대 '궁'과 '방'의 인적 구성 비교

구분	영은옹주방(박숙의방)*	수진궁**
내인(內人)	2-3	11
본택(本宅)	1	3 [†]
소임(所任)	5-6	21
고지기(庫直) 이하	22-23	55
비자(婢子)	6	16
마름(舍音)	1-2	9
계	37-41	115

주: * 영은옹주방과 박숙의방의 인적 구성은 똑같은데, 이와 관련한 해설은 후술한다.

** 수진궁의 인원수는 1854년의 『수진궁차하책(壽進宮上下册)』에 의거한 것이다.

† 본방노자(本房奴子) 2명과 본방비자(本房婢子) 1명을 합한 숫자이다.

출처: 『영은옹주방차하책』; 『숙의방차하책』; 조영준, 앞의 책, 263쪽.

전기 '본궁'의 용례에 관해서는, 신명호, 「조선전기 王妃·大妃의 本宮과 私藏」(『역사와 경계』 89, 2013), 41-68쪽을 참조하라.

2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숙의의 부모나 가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30) 궁방의 인적 구성에 대한 분석은 조영준, 앞의 책, 262-264쪽에서 수진궁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수행된 바 있다.

본택 마름에게 5말 등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소임, 고지기, 비자, 마름 등에게는 8말, 6말, 5말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었고, 해가 바뀌어도 변동이 관찰되지 않는 반면, 대궐 및 소궁의 내인에게는 해마다 분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상당량의 미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영온옹주방에서의 급료 지급 내역 중에서 일부 달(月)에 대해서는 지급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소임(所任)의 사례를 예시해보면, 1월·4월·5월·6월 등에 대해서는 급료를 지급했음이 명기되어 있지만, 2월·3월·7월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기재가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도에 대해서 공통적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면밀한 관찰을 통해 얻은 정형화된 사실이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영온옹주방차하책』만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숙의방차하책』과의 비교를 통해서였다. 우선 숙의방의 급료 지급 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구성이 영온옹주방의 인원 구성과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표1 참조).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박숙의방이나 영온옹주방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방’의 인적 구성이 유사했으리라는 추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자료는 현존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이 동일한 기관이었으리라는 추정이다. 인원 구성만 보아서는 마치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만약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이 하나의 기관이라면, 각기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은 독립적으로 운영된 별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851년 박숙의방의 급료 지급 내역을 보면, 영온옹주방과 마찬가지로 일부 월의 지급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월·3월·7월·윤8월 등의 내역은 있고, 1월·4월·5월·6월 등의 내역은 누락되어 있다. 영온옹주방의 회계장부에서 빠져 있던 내용을 박숙의방의 장부가 정확히 채워 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 기관이 통합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앞서 제기한 두 번째 가설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장부의 결재자가 동일인이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영은옹주방차하책』과 『숙의방차하책』 모두 월별 결재자가 ‘차지(次知) 김(金)과 ‘장무(掌務) 박(朴)’이었다. ‘차지 김’이 누구였는지는 장부상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지만, ‘장무 박’에 대해서는 실증이 가능하다. 장부상의 결재란에는 성만 적혀 있고 이름이 기입되지 않았지만, 지출 내역 중에서 장무의 ‘추수 마세(秋收馬費)’를 적으면서 실명을 적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서, 『영은옹주방차하책』의 1850년 9월분과 『숙의방차하책』의 1851년 윤8월분에서 “장무 박치검(掌務朴致儉)”이라는 기재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요컨대, 영은옹주방과 박숙의방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된 별개의 기관이지만, 인적 구성이 똑같다는 점으로 미루어, 양자가 통합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달마다 어느 한쪽의 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소속 인원은 급료의 대략 절반 정도씩을 각각의 기관에서 연간 수령하고 있다. 이는 표1에서 살펴본 대략 37-41명의 인원이 영은옹주방과 박숙의방의 운영에 각각 절반 정도씩 개입하고 있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영은옹주방이나 박숙의방의 운영 규모는 수진궁의 1/3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1/2을 곱한 1/6에 불과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박숙의와 영은옹주는 모녀관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 각각의 ‘방’이 상호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양자가 완전히 통합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가설을 연장해보면, 앞에서 소개한 『경조부지』의 ‘영은옹주궁’이 왜 영은옹주가 죽은 뒤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서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영은옹주궁’은 당시에 여전히 생존해 있던 박숙의의 거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그곳에서 영은옹주방과 박숙의방이라는 두 기관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¹⁾

31) 한 가지 첨언해두고 싶은 점은, 박숙의방과 영은옹주방이 수진궁에 합사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원까지 모두 수진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용동궁등록』에 등서된 감결(甘結)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박숙의방과 영은옹주방의 내인은 여러 궁방(各宮房)에 분속(分屬)되었다. 고민정·안혜경·양선아·조영준, 앞의 책, 132쪽을 참조하라.

IV. 영온옹주의 제사 거행과 묘소 관리

1. 제사 거행

1851·1853년의 박숙의방은 당시 생존해 있던 박숙의를 위해 운영된 기관이었고, 그래서인지 『숙의방차하책』에서는 제사의 거행 내역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영온옹주방차하책』에서는 영온옹주가 죽은 뒤 20여 년이 경과했는데도 수많은 제사가 주기적으로 거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죽은 옹주에 대한 제궁(祭宮) 성격의 ‘방’에서 어떤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영온옹주방차하책』에 따르면 영온옹주를 위해 거행된 제사는 크게 두 종류, 즉 고사(告祀)와 차례(茶禮)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고사는 1월·3월·5월 등 거의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졌다. 고사를 치를 때마다 정해진 물품을 구입하거나 지출했는데, 주로 붉은팥(赤豆), 쌀, 우족(牛足), 술(酒), 땃감(柴) 등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쌀은 싯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동전을 지급함으로써 구입하여 지출하였다. 또한 2개월 단위의 고사 외에 특정 목적이 명시된 추가 사례로서 장을 담글 때 치른(沈醬所入)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해마다 5월에 거행되고 연례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역시 주기적인 것이었다. 때로는 주기적 고사 외에도 대청(大廳)에서 별고사(別告祀)를 치르기도 했다. 고사라는 형태의 제사는 영온옹주방과 같은 제궁뿐만 아니라 박숙의방이나 수진궁을 비롯한 여타의 조달 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행해졌으며, 이는 ‘궁’이나 ‘방’의 운영과 관련한 절차에 고사가 정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영온옹주방에서 가장 흔히 치러진 제사는 차례였다. 차례의 종류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각종 절기에 치러진 연례행사로서의 차례를 들 수 있다. 차례가 치러진 절기는 정조(正朝, 1월 1일), 상원(上元, 1월 15일), 한식(寒食), 삼짱날(3월 3일), 초파일(4월 8일), 단오(端午, 5월 5일), 유두(流頭, 6월 15일), 칠석(七夕, 7월 7일), 백중(百種, 7월 15일), 추석(秋夕, 8월 15일), 중앙절(9월 9일), 동지(冬至), 납향(臘享) 등 13차례에 이른다. 거기에 영온옹주의 탄생일(10월 10일)에 지내는

생신(生辰) 차례, 사망일(4월 8일)에 치르는 기신(忌辰) 차례를 더하면 연간 총 15회의 차례가 정례적으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달 두 차례의 삭다례(朔茶禮)와 망다례(望茶禮)가 별도로 거행되었다.

차례에 주로 쓰인 품목은 쇠고기(肉種), 도라지(吉更), 떡(餅米), 과일(生果), 삼끈(麻絲), 어물(魚物), 해삼(海蔘) 등이었다. 이들 품목은 모두 그때 그때 동전(錢文)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거의 예외 없이 '미리' 대금을 지불하는 예하(預下)의 방식으로 거래되었다.³²⁾ 또한 개별 차례의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에 대하여 차례 비용으로 미리 지급(預下)된 금액을 모두 정리해보면 표2와 같다.

해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차례는 영온옹주의 기제사에 해당하는 기신 차례이며,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칠석 차례였다. 삭다례, 망다례, 추석, 납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례에는 해마다 변함없이 동일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는 차례를 지내기 위한 '매뉴얼' 성격의 정식(定式)에 의해 상차림이 공식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며, 각 상차림에 들어가는 물품 가격에 단기적 변동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차례를 치르기 위한 물품의 구입 경로가 자유 경쟁 시장보다는 공인된 납품업자 또는 특권 상인과의 거래를 통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조달 관행에 비추어본다면 그리 눈에 띄는 현상은 아니다. 또한 차례를 위해

표2- 영온옹주의 차례를 위한 연간 지출액 (단위: 냥)

차례명	연도			차례명	연도		
	1850	1851	1852		1850	1851	1852
기신(忌辰)	101.15	101.15	101.15	상원(上元)	13.65	13.65	13.65
삭다례(朔茶禮)*	60.56	60.85	60.02	단오(端午)	12.76	12.76	12.76
추석(秋夕)	60.50	67.70	67.70	납향(臘享)	12.73	12.70	12.70
한식(寒食)	60.15	60.15	60.15	삼짇날(3월 3일)	12.27	12.27	12.27
생신(生辰)	49.65	49.65	49.65	백중(百種)	12.23	12.23	12.23
망다례(望茶禮)*	47.10	57.77	46.40	중양절(9월 9일)	11.28	11.28	11.28
정조(正朝)	30.33	30.33	30.33	유두(流頭)	9.16	9.16	9.16
동지(冬至)	23.33	23.33	23.33	칠석(七夕)	8.76	8.76	8.76
초파일(4월 8일)	19.42	19.42	19.42	계	545.03	563.16	550.96

주: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차례는 음영 처리하였다.

* 월별로 지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연간 총액을 나타낸다.

32) 1851년의 경우에 윤8월이 있는데, 이 달에만 예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매년 지출되는 동전의 양은 대략 550냥 전후였던 것으로 집계되며, 연도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³³⁾

제사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표2에 정리한 개별 차례에 대한 지출액이 영온옹주방에서 치른 제사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 더하여 두 가지 정도의 추가 지출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영온옹주방에서 직접 제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 외에도 내수사·수진궁·명례궁 등 내탕 성격의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내수사에서 매년 4월에 창고 쌀(倉米) 1섬 1말, 참기름 5되, 꿀 1말, 밀가루 3말과 함께 무게 3냥짜리 황촉(黃燭) 1쌍의 값으로 동전 2전 4푼을 영온옹주방에 보냈는데, 이는 영온옹주의 기제수(忌祭需) 명목이었다. 쌀을 실어 나르는 운반비 1전까지 내수사의 지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내수사의 내부 기관인 호(戶)·예(禮)·형(刑)·공(工)의 4방(四房) 중에서 예방의 지출 몫이었다.³⁴⁾ 수진궁과 명례궁에서도 매년 4월 초에 각각 30냥씩의 동전을 영온옹주방에 보냈음이 확인되며³⁵⁾, 이는 모두 기신 차례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사4궁 중에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어의궁(於義宮)과 용동궁(龍洞宮)에 대해서는 1840-1850년대의 회계장부가 현존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내탕 성격의 '사궁(司宮)'에서는 '방(房)'에서 행하는 제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정례적으로 행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영온옹주의 기신 차례가 치러진 규모는 『영온옹주방차하책』에 기재된 지출 비용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별 제사의 지출 내역에서 확인되는 각각의 비용이 제수의 전부는 아니었다. 연간 치러지는 고사와 차례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연간의 제향(祭享)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일괄 구매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영온옹주방차하책』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서 황촉(黃燭), 지승(紙繩), 단향(丹香), 합갑(蛤甲), 녹말(菘末), 사롱(紗籠), 산저(散著) 등을 들

33) 각주 27)에서 1860년 기준으로 300냥의 동전을 실어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550냥은 그리 작은 규모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4) “倉米壹石壹斗 補縮并, 眞油伍升, 淸蜜壹斗, 眞末參斗, 錢文貳錢肆分 三兩黃燭一雙價以上 永溫翁主忌 祭需, 錢文壹錢 上項米負持軍價”(『내수사각방차하책(內需司各房上下册)』)

35) “錢文參拾兩 初八日 永溫翁主自家祭需年例送”(『수진궁차하책』), “錢文參拾兩 初一日 永溫翁主房祭需次送”(『명례궁차하책(明禮宮上下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당대 제공의 상비(常備)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기 부분적으로 개별 행사의 제수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일종의 간접비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을 비치하고 동전의 지출을 통해 확보된 물자를 활용하여, 하나의 제사가 끝나면 다음 제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태로 연이어 거행되는, 쉴 새 없이 제사를 치르는 것이 영온옹주방의 주요 기능이었다. 이 사례는 영온옹주가 죽은 뒤의 ‘방’이었으므로,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생애주기상의 제공(祭宮)에 해당하는 전형적 기관의 운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묘소 관리

앞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영온옹주의 사관(祀版)이 다른 것과 합사된 뒤에는 수진궁에서 통합하여 제사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면세결 일람표에서 1874년까지 영온옹주방의 토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860년의 면세결 회수 조치가 바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진궁반자책(壽進宮捧上冊)』의 1863년 6월분 기록에 따르면, 영온옹주방에서 계해년(癸亥, 1863)의 제사조로 창미(倉米) 30섬을 수진궁으로 이전(移轉)하였음이 확인된다.³⁶⁾ 이는 영온옹주방의 존재가 박숙의가 사망한 1854년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였고, 186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운영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영온옹주방에 할당된 면세결이 여전히 유지되고, 그로부터의 수입이 ‘창고 쌀’이라는 형태로 이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영온옹주방의 면세결이 1874년까지 면세결 일람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전’이라는 형식으로 마련된 제수를 통해 수진궁에서 행해진 영온옹주에 대한 제사는 1866년에 제정된 ‘제향신정식(祭享新定式)’에서 확인된다.³⁷⁾ 영온옹주의 제사는 숙의박씨의 제사와 더불어 거행되었으며, 묘소(墓)에서의 제사와 사당(廟)에서의 제사로 나누어져 있었다. 영온옹주와 숙의박씨의 묘소와 사당은 모두 양주(楊州)의 청과(靑坡)에

36) 조영준, 앞의 책, 269-270쪽.

37) 위의 책, 301-302쪽.

소제하고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 으로는 효창묘(孝昌墓) 동쪽 99보(步)의 지점이었다고 한다.³⁸⁾ 묘소는 식민지 조선 말기인 1945년 3월에 일제에 의해 고양(高陽)의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³⁹⁾, 사당 및 신주는 전하지 않는다.



그림5- 현재의 영온옹주 묘소 전경

출처: 지두환, 앞의 책, 440쪽.

1866년의 제향신정식에서는 영온옹주와 숙의박씨에 대한 제사를 1년에 각각 세 차례 지내게끔 규정하였다. 묘소 앞에서 거행하는 제사는 “예전과 같이” 한식과

추석에 지내고, 기신제는 사당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다. 합사 이전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간략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합사된 여타의 15위에 대한 묘제(墓祭)를 한식에만 거행하고 묘제(廟祭)를 8월 중정(仲丁) 때 1회만 거행하도록 한 것에 비한다면, 여전히 영온옹주와 박숙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특혜가 베풀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소는 제사의 거행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는 1850-1852년간의 『영온옹주방차하책』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우선, 묘역에는 단순히 무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각(祭閣)이다. 제각은 단순히 만들어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배(塗褙)를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휘장(揮帳)과 휘장줄(揮帳絙)이 공간 활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제사에 올리는 메(제삿밥)를 짓기 위한 도구로서 밥솥(食鼎)이나 작은 솥(爐口)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물통(水桶)도 있었는데 자주 수개(修改)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되었다. 기타 물품으로서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한 중간 크기의 홯불(中炬)이나

38) 당대에 효창묘(孝昌墓)라고 한 곳은 현재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孝昌公園) 일대에 해당한다. 『고양군읍지(高陽郡邑誌)』에서는 “永溫墓 在郡南去五十里富原面”이라 하였다.

39) 원래의 위치를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약 16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초롱(燭籠)이 확보되었고, 등유(燈油)나 너가래(木加乃)의 구입 내역도 보인다.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의 마름이 배치되었으며, 때를 갈아입히는 개사초(改莎草)의 내역도 보인다.

V. 박숙의방과 영온옹주방의 재정 운영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내수사·수진궁·명례궁 등 대규모 사궁(司宮)의 재정 운영과 비교해볼 때, 영온옹주방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내입(內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내입이란 궁중에 물자를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온옹주방의 지출 내역에서는 칠석이나 유두에 행해진 차례의 퇴선(退膳)을 내입한다는 내역 등의 소소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영온옹주방과 같은 왕자녀의 방은 궐내의 왕실재정 운영을 보조하는데 그다지 기여하는 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온옹주방이 궐내의 재정과 깊이 관련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유력한 후보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영온옹주방에서 1850년대는 그 생애주기상으로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생애주기' 형 궁방을 '사가(私家)'와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사가'에서는 내입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제공'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정황은 박숙의가 생존해 있을 때에 작성된 『숙의방차하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된다. 박숙의방에서 지출한 1851년과 1853년의 회계 내역을 보면, 영온옹주방의 사례와 달리 '내용(內用)'을 비롯한 내입 항목이 주기적으로 발견되어, 궁중으로 들여 썼음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박숙의방이 제공이 아니라 생존해 있던 박숙의의 생계 또는 가계(家計)를 위한 것이며, 당대의 궐내와 어느 정도 관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로서, 영온옹주방과는 일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둘째, '궁'이 대개 큰 규모였던 것에 비해 '방'은 소규모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특정 왕자녀의 생계나 제향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운영되었던 수십 곳의 '방'에는 궐내로 물자를 들이려는

목적도, 그를 위한 재정 여력도 애초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앞에서 살펴본 제수에 대한 지원 사례에서처럼 내수사 또는 4궁에서 각 ‘방’의 재정을 보조하는 사례가 보이는 것이다. 제수의 지원 외에도 내수사나 수진궁에서 각각의 ‘방’에 각종 물자를 보냈음이 확인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수사나 수진궁에서 영온옹주방이나 박숙의방에 어떤 물품을 보냈을 경우, 해당 ‘방’에서는 수입 장부에 해당하는 ‘받자책(捧上冊)’에 그 사실을 기입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받자책이 없어 그러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특정 물품을 가지고 온 사·궁의 하인에게 해당 ‘방’에서 일종의 여비를 지급한 내역이 『영온옹주방차하책』이나 『숙의방차하책』에 기재되어 있어서 양자 간의 물품 수수 사실이 실증되고 있다. 예컨대, 특정 물품을 내수사(內司)에서 영래(領來)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수진궁의 하인(奴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식의 정보가 곳곳에서 보인다.⁴⁰⁾ 내수사가 영온옹주방에 보낸 물품을 보면, 유청(油淸), 소금(鹽), 역서(曆書), 녹두(菘豆), 콩(太), 의련목(衣練木), 항아리(瓮) 등으로 다양하다.⁴¹⁾ 요컨대, 후궁이나 왕자녀의 방이 제사 거행 이외의 명목으로도 왕실의 주요 조달 기관인 1사4궁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영온옹주방과 박숙의방에서 그러한 공통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의 재정 운영에서는 한 가지 큰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그것은 바로 재정 지출의 수단에서 확인된다. 영온옹주방에서는 쌀과 동전만으로 회계 지출이 이루어진 반면에, 박숙의방에서는 쌀과 동전 외에도 녹두, 찹쌀(粘米), 벼(租), 참깨(眞荏子), 콩(太) 등의 실물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해당 방의 당사자가 생존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영온옹주방과 박숙의방의 지출 내역을 쌀과 동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종합하고, 쌀 1섬에 동전 5냥 등 당대의 공식적인 환산율을 적용하여 정리한⁴²⁾ 그림6을

40) 일례로, 『영온옹주방차하책』의 4월분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錢文壹兩肆錢 油淸等領來內司人下, 錢文參錢 壽進宮奴子下”

41) 각 품목의 수량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받자책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42) 적용한 환산식은 쌀 1섬=동전 5냥, 벼 1섬=콩 1섬=동전 2.5냥이며, 찹쌀·녹두 및 참깨는 소소하여 생략하였다. 환산 기준과 관련해서는, 김재호, 「조선 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六典條例』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숙의방의 경우에도—장부상으로 산견되어 주목되는 바와 달리—동전과 쌀 외의 현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그림6을 통해 판단하건대, 해마다 다소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1850-1853년간 영온옹주방이나 박숙의방의 연간 재정 지출 규모는 동전으로 환산하여 대체로 3,000냥에서 5,000냥 사이, 평균 4,000냥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년간의 단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에서 특별한 추세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두 기관을 통합하여 추산하더라도 1만 냥을 넘지 않는 수준의 규모였던 것으로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1854년을 기준으로 수진궁의 재정 지출이 약 3만 7,000냥 남짓이었음을 감안한다면⁴³⁾, 대략 1/4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 영온옹주방이나 박숙의방 재정의 부족분이 1사4궁에 의해 보조되고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앞에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약 1/3 정도였으리라 추정할 것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음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그림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동전 지출의 규모가 쌀이나 기타 현물의 지출보다 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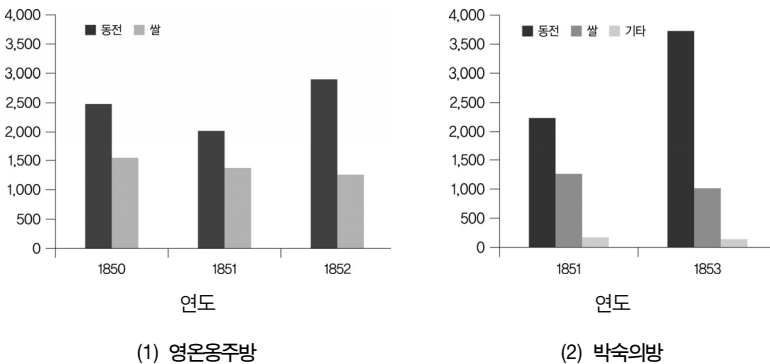


그림6-영온옹주방·박숙의방의 품목별 연간 지출 (단위: 냥 환산액)

주: 영온옹주방의 지출액에는 예하(預下)와 실차하(實上下)가 합산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b), 50쪽을 참조하라.

43) 조영준, 앞의 책, 265쪽 참조.

다시 말해, 전체 지출에서 동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고 있으며, 이는 당대의 정부재정에서 동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대비된다.⁴⁴⁾ 재정 구조에서 현물의 비중이 낮고, 화폐의 성격을 가지는 동전과 쌀 중에서도 동전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왕실재정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4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왕실재정이 정부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⁴⁵⁾ 대개 궁방으로 통칭되는 사(司)·궁(宮)·방(房)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방'이므로, 동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영운옹주방과 박숙의방의 회계장부 중에서 지출 내역을 담은 차하책만 현존하고 반자책이나 회계책은 찾을 수 없는 점은 두 기관의 재정 운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⁴⁶⁾ 그런데 일반적인 차하책에는 지출 내역과 월별 소계만 집계되어 있는 반면에, 『영운옹주방차하책』과 『숙의방차하책』에는 매달의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전월의 잔고에서 해당 월의 수입과 지출을 더하고 뺀 당월의 잔고가 시유재(時遺在)라는 명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특징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월간 수입액을 역산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입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시유재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검증해볼 방법이 없고, 3-4년간의 짧은 기간에 대해 수지(收支) 상황을 점검하여 의미를 부여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⁴⁷⁾

44) 김재호, 앞의 논문(2010b), 50쪽; 김재호,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銅錢: 『賦役實摺』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a), 219쪽.

45)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1860년대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25쪽.

46) 애초에 이들 방에 대한 반자책이나 회계책이 없었으리라고 상정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1851년 1월의 『영운옹주방차하책』 기록 중에 “正書會計册所入”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궁방과 마찬가지로 방식의 장부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반자책·차하책·회계책의 3책을 초본·(중초본)·정서본의 형태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현존하는 『영운옹주방차하책』과 『숙의방차하책』은 모두 최종 결재까지 완료된 정서본(正書本)에 해당하며, 이는 그림2에서 확인되는 인찰선(印札線)이나 도서(圖署)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내수사나 수진궁과 같은 사·궁의 정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정성스럽게” 기재되었다는 점도 ‘방’의 장부에서 포착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7)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영운옹주방차하책』과 『숙의방차하책』의 내역 중에서 유독 쌀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가용(加用)’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책의

VI. 맺음말

일개 궁인의 지위에 있던 여자가 국왕의 승은을 입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당시의 후궁이라면 누구나 바라던 아들이 아닌 딸이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그녀는 열세 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딸이 죽은 뒤에도 그 어머니는 25년간을 홀로 살아갔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에 이들의 무덤은 먼 곳으로 이장된다. 만약 이런 스토리가 조선 후기 일반 백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단지 눈물을 머금고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의 왕실은 이들 모녀를 위해 생사에서 사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각종 특혜를 베풀어주었다. 영온옹주방과 박숙의방의 지출 장부인 '차하책'에 기록된 회계 내역이 그러한 배려의 실상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왕실은 조선 왕조가 제도적·정책적으로 추구하던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주로 1사4궁이 예외적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개혁의 한계에 주목하였으나, 소규모의 일개 '방'이라면 정조-순조-고종으로 이어지는 단속적 개혁에서 규정을 철저히 준용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음도 분명하였다. 하지만 박숙의와 영온옹주 두 모녀에게만은 유독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관철되지 않은 채, 재량에 의한 예외적 특혜가 주어지고 있었다. 순조의 자녀들이 예외 없이 모두 요절·단명한 가운데, 영온옹주가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유와 그러한 관심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들을 위해 운영된 기관의 지출 장부를 분석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였다. 종래에는 조선 후기 국가가 후궁이나 왕자녀의 생계와 제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 글을 통해 영온옹주와 박숙의에 대한 왕실의 재정 운영, 특히 제사 거행과 묘소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었다.

기재가 겹치는 기간인 1851년 3월의 시유제에서 공통적으로 가용이 보이는데, 영온옹주방에서는 1섬 14말 7되 1홉 7작이, 박숙의방에서는 2섬 14말 9홉 6작이 가용미(加用米)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두 기관에서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정확히 동일한 양의 쌀이 가용하(加用下)의 형식으로 지출되어 청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조 임금의 총애를 받은 모녀의 짧은 생애와 사후의 관리 양상을 통해 19세기 왕실경제사의 일단을 복원해보려 시도한 것이다. 다른 ‘방’의 사례는 자료의 현존 상황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향후에 유사 자료를 활용해서라도 보완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京兆府誌』.
『高陽郡邑誌』.
『內需司各房上下冊』.
『明禮宮上下冊』.
『明溫公主房嘉禮膳錄』.
『備邊司膳錄』.
『續大典』.
『壽進宮捧上冊』.
『壽進宮上下冊』.
『淑儀房上下冊』.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永溫翁主房上下冊』.

고민정 · 안혜경 · 양선아 · 조영준, 『용동궁등록(龍洞宮膳錄) -탈초본(脫草本)-』.
소명출판, 2015.

김재호,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銅錢: 『賦役實摠』을 중심으로」. 이현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a, 211-244쪽.
_____,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六典條例』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현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b,
41-74쪽.

김장겸 · 김선주 · 권순형 · 이순구 · 이성임 · 임혜련, 『한국 왕실여성 인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서울大學校奎章閣,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VII』(史部 3). 서울大學校奎章閣, 1983.
신명호, 「조선헌기 王妃 · 大妃의 本宮과 私藏」. 『역사와 경계』 89, 2013, 41-68쪽.
李美善, 『조선시대 後宮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2.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1860년대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중심으
로」. 이현창 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0, 105-134쪽.

_____, 「연잉군방(延昞君房)의 살림살이와 경제적 기반」. 藏書閣 編纂, 『英祖大王
資料集5: 譜牒, 敎命, 御製御筆, 其他』,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125-
133쪽.

_____,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소명출판, 2016.

지두환, 『순조대왕과 친인척』(조선의 왕실 23). 역사문화, 2009.

韓祐勗,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東亞文化研究所, 196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국 문 요 약

현재까지는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실체를 복원하는 작업이 1사7궁(一司七宮)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달 기관 또는 제궁(祭宮)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궁 또는 왕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된 소규모 ‘방(房)’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회계 장부인 『영은옹주방차하책(永溫翁主房上下冊)』과 『숙의방차하책(淑儀房上下冊)』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왕실의 내밀한 영역을 들여다보았다. 우선 영은옹주와 그의 어머니 박숙의가 보유한 각종 경제적 기반을 검토함으로써 ‘방’의 재정적 기초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영은옹주가 죽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지속된 제사의 거행 실태에 접근하였으며, 묘소의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밝혔다. 비록 현존하는 자료가 짧은 기간의 정보만 전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영은옹주방과 박숙의방은 외견상 마치 독립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 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방’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사실과 더불어, 대규모 ‘사궁(司宮)’의 재정과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전 위주의 재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사적(私的)’ 성격에 대한 재확인도 가능하였다.

투고일 2016. 6. 21.

심사일 2016. 8. 6.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왕실재정(royal finance), 후궁(royal concubine), 옹주(illegitimate princess), 제사(memorial service), 묘소 관리(graveyard management), 여성사(women history), 소수자(minority)

Economic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Royal Procurement
Agencies with “Life-cycle” Type in Late Chosŏn Korea: Cases of
Paksukŭibang and Yŏng’ongjubang

Cho, Young-jun

Research on royal financ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has focused on major agencies, such as Naesusa and Sujingung, among others. Not enough information has been reported about the finance of “pangs” for princes/princesses or royal concubine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reality of economy for the royal family by analyzing the account books of Yŏng’ongjubang and Paksukŭibang. The economic foundations of Princess Yŏng’on and her mother Sukŭi Pak were introduced. Then, the memorial service and graveyard management for Princess Yŏng’on after her death were empirically reviewed. Despite the short period of data in the account books,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found: First, the “pangs” of Princess Yŏng’on and her mother Sukŭi Pak were actually integrated even though they were apparently independent. Second, the small scale of each pang’s finance was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of major agencies. Finally, the main medium of management of each pang was a coin, which means that its characteristic was private rather than public.